

얼마나 탄력적이길래?

아이보짜

탄력적근도시강제

1. 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이 있는. 또는 그런 것.

탄력적 소재의 속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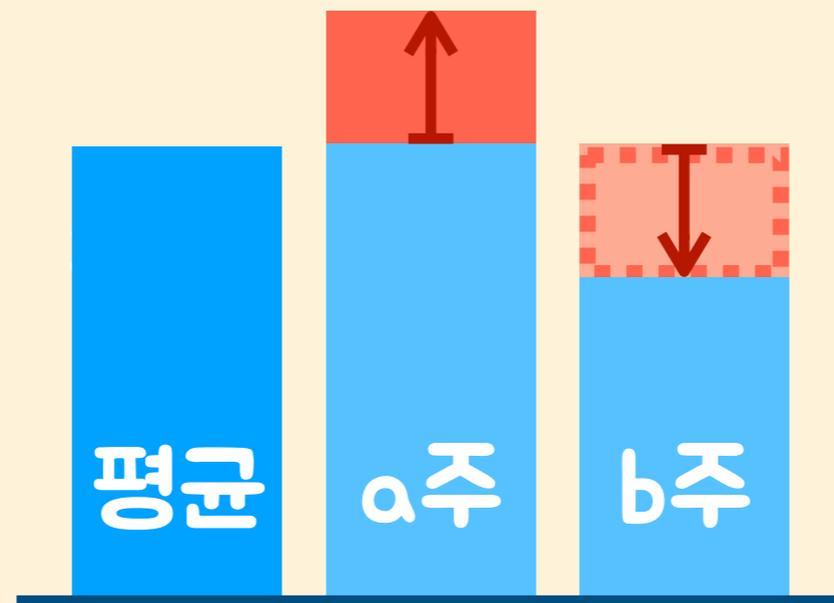
2.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또는 그런 것.

탄력적 운용

탄력적근로시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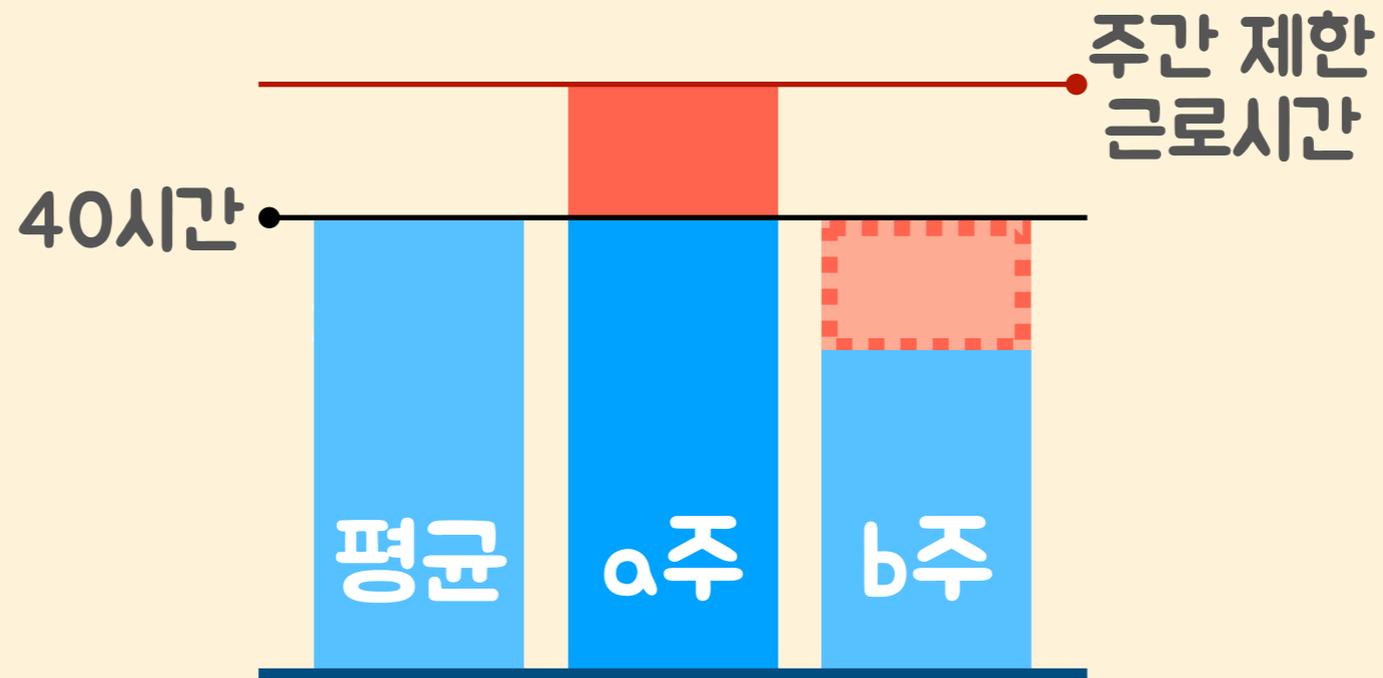
얼마나 탄력적 일까요?

탄력적근무제



탄력적 근무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탄력적근무제



단위기간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죠.

2주 이내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평균을 내는 기준인
단위 기간에 따라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로 나눕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요?

2주 이내는 **취업규칙** 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제○○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회사는 ○월부터 ○월까지 ○개월 동안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 첫째 주 ○○시간, 둘째 주 ○○시간
 2. 첫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부터 ○○:○○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부터 ○○:○○까지)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원이 첫째 주에 ○○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 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제도의 유효기간은 제도 적용 시점부터 1년으로 한다.

이때, '2주 이내' 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에는
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 근로일 별 근로시간은 어떠한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 _____와 근로자대표 _____는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합의서의 내용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에 적용한다.

제3조(단위기간) 이 합의서의 단위기간은 매분기 초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에 있어서 1일의 근로 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일 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월	1일~말일	7시간(월~금)	09:00	17:00	12:00~13:00
○월	1일~말일	8시간(월~금)	09:00	18:00	12:00~13:00
○월	1일~말일	9시간(월~금)	09:00	19:00	12:00~13:00

5조(휴일) 단위기간 중 주 2일(토·일요일)은 휴무하되, 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6조(적용제외)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본 합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조(연장근로 가산임금)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한다.

7조(연장·야간·휴일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취업규칙 제○○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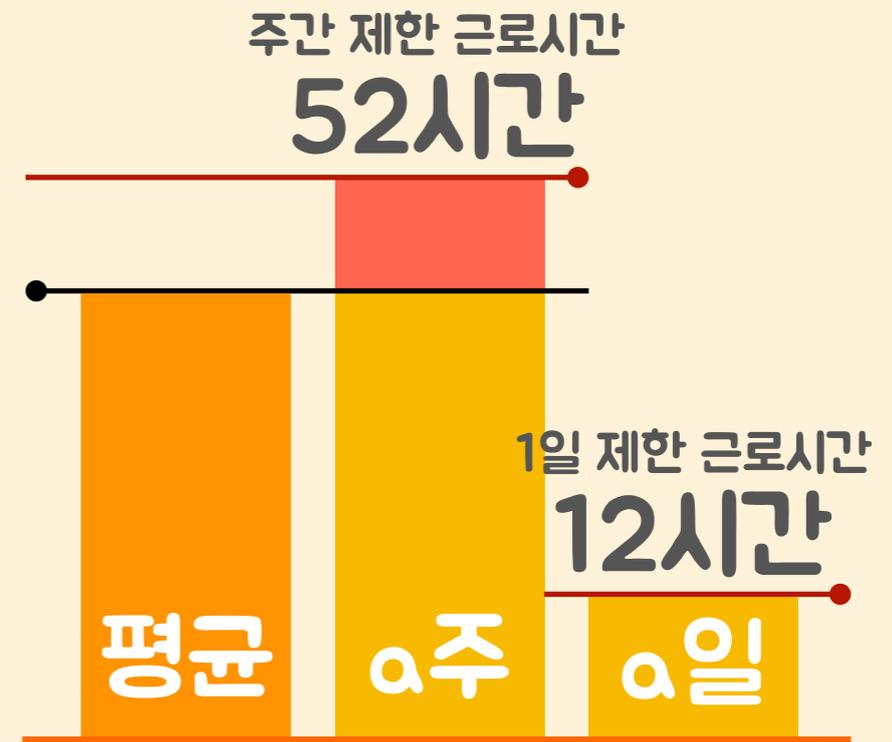
8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개월 이내'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합의서에는 단위기간을 명시하고, 대상근로자,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2주 이내



3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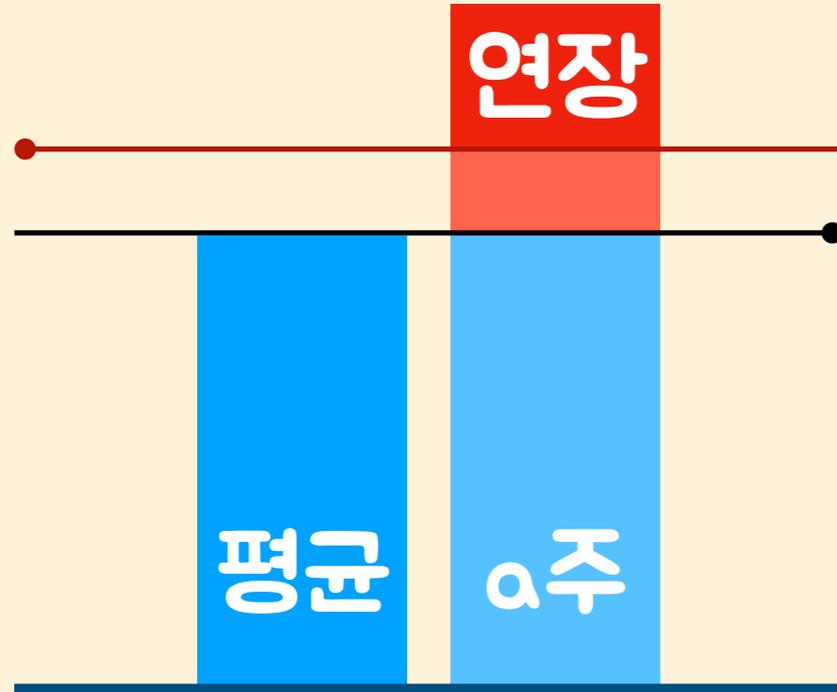
2주 단위에서는 **특정한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에서는 **특정한 주 52시간**,
특정일은 최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2주 이내

주간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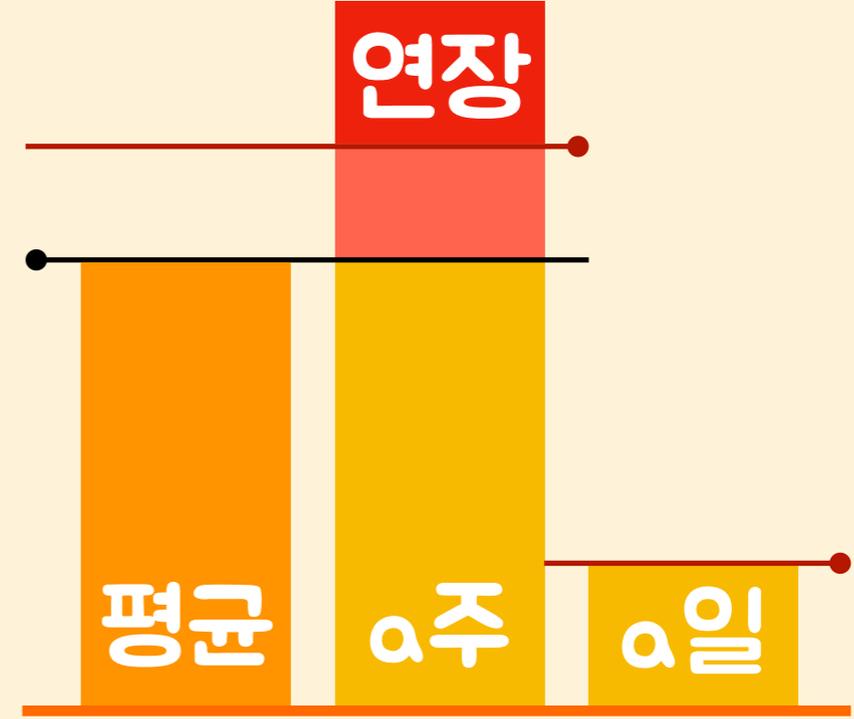


3개월 이내

주간 최장 근로시간

64시간

연장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12시간을 추가 근로하게 된다면
2주 이내에서는 **최장 60시간**,
3개월 이내에서는 **최장 64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일별 근로시간도 사전에 정해놓아야 하고
최장 근로시간까지 제한되어 있다니....

얼마나 **탄력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미리 알고 있어야 겠죠?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이내	 3개월 이내
의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 일에 8시간 초과 근로 가능	
도입	취업규칙으로 규정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제한	특정 주에 48시간 근로시간 초과 불가 (연장 휴일근로 시간 제외)	특정 주에 52시간 특정 일에 12시간 근로시간 초과 불가 (연장 휴일근로 시간 제외)
주간 최장 근로시간	60시간 (48+연장근로12시간)	64시간 (52+연장근로12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이내	 3개월 이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때	<p>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p> <p>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p>	<p>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p> <p>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p> <p>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p> <p>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초과</p>
적용 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